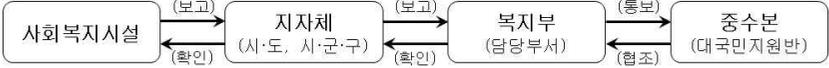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규대비표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 최소화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(10.11(일) 24시)에 따라 전국에 대해 「사회적거리두기」 2단계 조치를 해제하고 1단계로 복귀</u> ○ <u>사회복지시설*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</u> 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에 대한 대응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(“20.11.1) 시행(11.7) 됨에 따라</u> ○ <u>사회복지시설*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</u> 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(참고1) 	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사회적 거리두기」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<u>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를 위한 신속한 사전 조치 실시</u> <input type="checkbox"/> <u>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각 지자체는 전국·권역별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단계가 조정될 경우 <u>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</u> <input type="checkbox"/> ①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, <u>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원칙,</u>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<u>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·대상 조정</u> * <u>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중지(단,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 유지)</u> 	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<u>시설 입소자의 면회·외출·외박 금지, 가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</u> * <u>면회,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</u> ○ <u>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,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,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·운영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<u>시설 입소자의 면회·외출·외박 관련</u> * <u>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 마련할 것</u> ○ <u>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,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,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하는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</u> * <u>단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하되, 입소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권장</u> 	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외출은 ①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(원),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·운영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외출·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(원),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·운영</u> * 단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외출·외박 전면금지 	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<u>이용자·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</u> ○ <u>자원봉사자·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</u> ○ <u>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, 발열 확인,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(서식 3)</u>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<u>이용자·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</u> ○ <u>자원봉사자·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, 발열 확인,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(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)</u> - <서식3> 작성 후 출입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○ <u>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충분한 손씻기)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</u> □ <u>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불요·불급한 출장 자제</u> 	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<u>휴관(원) 시,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유지 방안 마련·운영</u> 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<u>휴관(원) 시,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</u> * <u>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,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</u> 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 	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
8	<신설>	<p>Ⅲ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</p> <p>□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</p> <p>○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지부(중수본 및 사업부서)와 지자체, 사회복지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염관리책임자 :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,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수행 - 감염자 발생,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시설은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></p>  <pre> graph LR A[사회복지시설] -- "(보고)" --> B["지자체 (시·도, 시·군·구)"] B -- "(확인)" --> A B -- "(보고)" --> C["복지부 (담당부서)"] C -- "(확인)" --> B C -- "(통보)" --> D["중수본 (대국민지원반)"] D -- "(협조)" --> C </pre> <p>○ 방역조치 점검 * 대응지침상 양식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회복지시설) 이용자·입소자(거주자)·종사자 감염병 모니터링(2주간) 및 방역수칙 교육 결과*를 소관 지자체(시·군·구)에 보고*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포함(지침 시행시 1회, 이후 신규 직원 대상) **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반드시 소관 시설 전체에 지침을 포함하여 공문 등 방법으로 안내할 것 - (지자체) 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 범위·대상이 확대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검한 후 운영 재개·확대 <p>○ 공통 적용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시, 사전 조치 신속 시행(지자체·시설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설 소득 및 방역계획 수립·시행,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,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,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·실시 등 -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·시설별 위험도를 고려*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·대상 등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,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(서비스)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 결정 	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
-----	--------	--------	----

<신설>

-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·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*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

< 참고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>

단 계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상 황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사 회 복 지 시 설	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				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

○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

- **1단계(생활 속 거리두기)** :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운영
 - *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제한(4㎡당 1명)하여 운영,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·사전예약제 권장
 - * 생활시설은 외출·외박 제한적 가능,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
- **1.5단계(지역적 유행 개시)** :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
 - * 신체활동 제한,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
- **2단계(전국적 확산 개시)** : 이용 정원의 50% 이하(최대 100인) 운영
 - *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,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
 - * 생활 시설은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
- **2.5단계(전국적 유행 본격화)** : 이용 정원의 30% 이하(최대 50인) 운영
 - *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,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
 - *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
- **3단계(전국적 대유행)** :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 중지
 - *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
 - *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
10	<신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부 가이드라인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거리 두기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단계 (운영유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역 조치</td> <td>▶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미준수시 이용 제한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 시설</td> <td>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▶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,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▶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 시설</td> <td>▶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 ▶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1.5단계 (운영유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역 조치</td> <td>▶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,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▶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 시설</td> <td>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,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▶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▶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 시설</td> <td>▶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단계 (운영유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역 조치</td> <td>▶ (유행권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%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(이용시설) ▶ (타 지역) 1.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 시설</td> <td>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,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▶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 시설</td> <td>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거리 두기	구분	주요 내용	1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미준수시 이용 제한)	이용 시설	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▶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,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▶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	생활 시설	▶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 ▶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	1.5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,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▶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	이용 시설	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,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▶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▶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	생활 시설	▶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	2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(유행권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%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(이용시설) ▶ (타 지역) 1.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	이용 시설	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,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▶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	생활 시설	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	
거리 두기	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1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미준수시 이용 제한)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용 시설	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▶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은 띄워 앉기, 가림막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서 좌석 간 1m 이상 이격이 가능하면 제공 ▶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설 이용시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 시설	▶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 ▶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
1.5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(유행권역) 위험시설·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,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▶ (타 지역)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용 시설	▶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·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나,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▶ 식사 등 제공시 탁자 간 1m 이상 이격 ▶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 시설	▶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
2단계 (운영유지)	방역 조치	▶ (유행권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%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(이용시설) ▶ (타 지역) 1.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용 시설	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,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▶ 전 시설 시간제·사전예약제 원칙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 시설	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																	
11	<p><신설>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10%;">거리 두기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.5단계 (운영 유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역 조치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전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%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(이용시설) ▶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 시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중사지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,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※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 시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, 외부 출입 인원 통제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3단계 (운영 중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방역 조치</td> <td>▶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용 시설</td> <td>▶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 시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전면금지, 외부 인원 출입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*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아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본 사항을 안내하기 바람</p> <p>□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left: 4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</p> <p>○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설 운영을 중지하더라도, 취약계층 긴급돌봄(사회서비스원 등)*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최대한 운영·유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아동(도시락, 식사 지원 등), 노인(안부 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 유지, 보호자(노인·장애인) 부재 등 사유로 지속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</p> </div>	거리 두기	구분	주요 내용	2.5단계 (운영 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전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%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(이용시설) ▶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 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중사지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,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※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, 외부 출입 인원 통제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	3단계 (운영 중지)	방역 조치	▶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	이용 시설	▶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전면금지, 외부 인원 출입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	
거리 두기	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	
2.5단계 (운영 유지)	방역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전국) 서비스 이용 인원을 30% 이하로 강력하게 제한(이용시설) ▶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 																		
	이용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 시간대 프로그램(서비스) 대상을 이용 정원의 30% 이하가 되도록 조정(이 경우 중사지를 포함하여 최대 50인을 넘을 수 없음)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▶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,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 현황, 방역에 용이한 건축물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 결정 ※ 운영 중지시설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																		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, 외부 출입 인원 통제 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·외박 가능 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																		
3단계 (운영 중지)	방역 조치	▶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																		
	이용 시설	▶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																		
	생활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출·외박 전면금지, 외부 인원 출입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현행(6판)	개정(7판)	비고
12	<p><신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시설*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이 방역조치가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유지하여 취약계층 소득보전 도모(필요시 격일제 등 유연근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활사업(기존 2단계 발령시 250개 기관 중 약 230개 기관은 방역 조치 후 운영) 노인일자리(기존 2단계 발령시 74만명 중 일자리 중 50~60만명은 방역 조치 하 활동) ○ 아동·보육시설은 거리두기 조치로 시설이 휴원(가정 돌봄 권고)하더라도 긴급 돌봄(보육) 서비스는 제공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률적 휴원 권고 대신 지자체에서 지역 코로나19 현황 등 고려하여 제한적 운영 원칙, 종사자 복무 관리 계획 수립, 집단행사·교육 취소·연기, 외부인 출입·접촉 금지 원칙 준수 - 영·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음식물 취식 허용 등 요건을 다소 완화할 경우 출입자, 물품·시설·공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 ○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에서 발생 현황, 유동 인구,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하며, 이용 중지 조치 시 대체 서비스 제공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에 안부 확인 등 관리와 함께 도시락 배달 등 대체식 지원,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서비스 유지 ○ 장애인·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내 외부인 출입·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입소자·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비대면 면회 허용, SNS 등을 통한 동영상·사진 주기적 게시,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활동 허용 등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V 지자체 협조사항</p> <p>□ (현장지원)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</p> <p>○ (건강관리책임자) 시설 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V 지자체 협조사항</p> <p>□ (현장지원)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,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</p> <p>○ (감염관리책임자)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을 지정토록 <u>조치 필요</u></p>	